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4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10.

발 의 자 : 김형동 · 김소희 · 한지아
우재준 · 고동진 · 진종오
임이자 · 김위상 · 안철수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, 도, 특별자치도 중에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경상북도 도청을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말 기준 2만 2591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·문화시설 등이 부족하여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,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

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3항 신설).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에”를 “제2항 및 제3항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에서”를 “제4항까지에서”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가 소재한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혁신도시의 지정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6조(혁신도시의 지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「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가 소재한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하여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한다.	④ -----제2항 및 제3항에----- ----- ----- -----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⑤ -----제4항까지에서----- ----- ----- ----- -.